##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73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조계원・박지원・김문수

박용갑・박희승・윤준병

박해철 • 주철현 • 임오경

문금주 · 위성곤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,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.

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,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#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중 "경우에는"을 "경우 및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퇴직급여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 | 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 |
| 제한) ① ~ ③ (생 략)    |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  | <b>4</b>           |
|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 |                    |
| 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 |                    |
| 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 |                    |
| 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 |                    |
| 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  |                    |
|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  | 경우 및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 |
| 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 |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   |
|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    | <u>정된 경우에는</u>     |
| 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  | <u></u>            |